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함〉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9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함	2
※ 참고자료	4
1.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현황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6. 3. 16.
3. 회 부 일: 2026.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지도자는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청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가 요구됨.

이에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명문화하여 자격 발급 전 해당 교육의 이수율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② (생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¹⁾. 이때 폭력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필수

1) [참고자료]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현황 참조

연수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²⁾,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제외되어 있어 지도자 양성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현장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육지도자가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체육지도자가 활동하는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현장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육지도자 자격 연수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³⁾.

문 의 처
02)6788-5375

2)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단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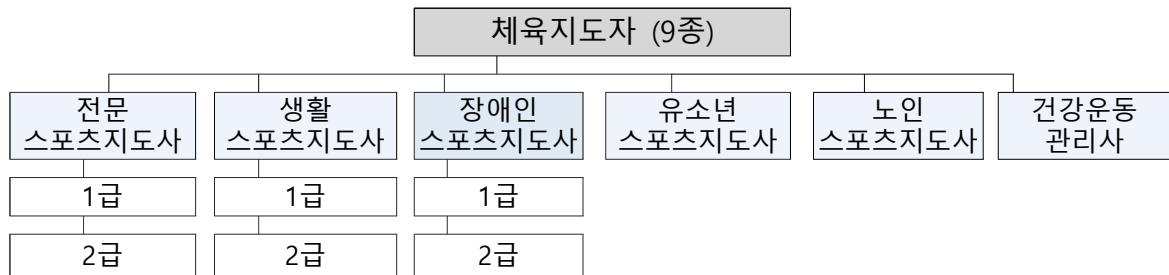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 3)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체육지도자의 장애인 편견 해소 및 인식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장벽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개정안이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율 제고 및 중도 포기를 감소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임.

[참고자료]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현황(출처: 문화체육관광부)

I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국민 체육활동을 지도할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제도 운영
-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 양성)
- ☐ (자격종류) 총 9개 자격



- ☐ (취득절차) 필기시험 → 실기구술시험 → 연수 → 자격증 발급
- ☐ (검정료) 필기시험 25,000원 / 실기구술시험 45,000원 * 연수는 취득자격별 상이
- ☐ (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및 4개 자격검정기관(공단, 체육회, 장체회, 국기원)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 운영기관(4개)]

- 스포츠지도사 : 대한체육회 산하 72개 종목단체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29개 종목단체
- 스포츠지도사(태권도 종목) : 국기원
- 건강운동관리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사업예산) 5,336백만원(민간위탁사업비 / '26년 기준)
- ☐ (발급현황) 누적 432,606건 / '25년 26,578건 자격발급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계
계	292,514	16,633	1,843	27,772	22,037	23,716	21,513	26,578	432,606

II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 체계

□ 필기시험

- (대상자격) 9종류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응시대상) 자격종류별 응시요건 구비자
- (시험과목) 자격종류별 총 4~8개 과목(객관식 4지선다형)
 - * 합격기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대상자격) 8종류(1급 전문 실기·구술시험 없음)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기원, 대한장애인체육회
- (응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 (시험종목) 전문 58개, 생활 66개, 유소년 63개, 노인 60개, 장애인 38개, 건강운동관리사 4개
 - * 합격기준: 실기·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연수운영

- (대상자격) 9종류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연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4개 연수원

- **(연수대상)** 자격검정(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 **(연수과정)**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단, 기존 연수면제 대상(체육교사, 국가대표, 추가취득 등)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 교육(3시간) 실시
- * 이수기준: 일반수업 및 현장실습 연수과정 각각의 100분의 90 이상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지도·현장실습 평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